부천시

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6호

부천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 공고

부천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급	인원	근무 기간	담당업무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1명	2년	**<감사담당관 업무 총괄>** · 자체 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직기강 확립(공직자 징계 등) ·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 관련 사항 · 공직자 청렴도 제고 및 부패 방지 관련 사항 · 고충 민원, 청원, 진정 사항 조사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항 · 그 밖에 감사 및 조사 관련 사항 등

▸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총 근무 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하여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개방형직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20세 이상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

① 다음 각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응시요건

- 다음 임용예정 직무분야 및 직무분야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체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 경쟁 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통요건과 응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6. 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하되, 시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 심사

* 직무수행 요건(5)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5.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 2026. 7. 8. ~ 7. 14. 근무시간 내(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①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시청 민원실에서 직급별 해당 증지 발급 : 10,000원

②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편번호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기제공무원 채용담당자)
- 우편봉투 겉면에 '부천시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해당 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체국 통상환증서(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 수입증지 사용 불가)를 발급받은 후 동봉**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회신 예정

○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26. 6. 23. ~ 2026. 7. 7.	2026. 7. 8. ~ 2026. 7. 14.	서류전형	2026. 7. 20. 전·후	부천시청 나눔실	2026. 7. 21. 전·후
		면접시험	2026. 7. 24. 전·후	부천시청 나눔실	2026. 8. 7. 전·후

※ **기관의 사정으로 시험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면접시험 세부(확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 ⇒ 채용정보 ⇒ 부천시채용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제1호)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방문접수)** 민원실에 수수료 납부 후 인사팀에 원서 제출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 우편 통상환증서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 시간 유의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별지 서식 제5호)	해당 사항만 작성(해당 없는 항목은 삭제 가능)	필수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응시분야만 발췌 후 해당 자격기준 선택(해당 없는 항목 삭제)	필수
7. **동의서** 각1부. (별지 서식 제7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또는 초본 제출-병역사항 표기)	필수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	해당자 필수 (학력)
9. 관련 분야 **자격(면허)증**	○ 관련 분야 또는 정보화 자격(면허)증	해당자 필수 (자격)
10. **경력(재직) 증명서**	○ **<u>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u>**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주단위근무시간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u>보수내역 및 주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u>**해야 함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u>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u>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 경력 인정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해당자 필수 (경력)
1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응시자가 직장가입자로 표기된 내역만 출력 ○ 미해당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해당자 필수 (경력)
11-1~5 **기타 증빙서류**	○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2년 이내) ○ 관련분야 연구실적(논문, 저서 등) ○ 관련분야 수상실적(기관명, 수상자, 공적 등 기재된 것) ○ 관련전공 증명서(추가필수자격요건, 우대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자
※ 주의사항	○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 클립, 플래그(띠지) 등 사용금지, 양면인쇄 금지 ○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7. 신분 및 보수수준

○ 신 분

- 개방형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용 절차를 거쳐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 임용약정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근무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보수 및 근무 기간

임용예정 분야	임용직급	기본연봉액		근무기간
		상한액	하한액	
감사담당관	개방형 5호	93,801,000원	53,316,000원	2년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결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부천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무 및 보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 착오,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개인 휴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반드시 기재)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 상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드립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부천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본인의 평균점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및 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 내용 관련 문의 : 감사담당관 감사1팀(☎ 032-625-2162)